

의안 번호	2157	<b>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0. 6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0. 6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0. 19.(목)

## 2. 제안이유

-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자격 변동사항과 정책자문단 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상위법에 따른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직개편에 따른 자문단 업무이관으로,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조정  
(안 제3조, 제8조)
- 나. 개별 국장명을 본청 4급 공무원으로 변경

다. 총괄간사인 기획예산실장의 위원 제외로, 부구청장 직속 부서장을

위원 자격으로 조정

- 총괄간사, 분과위원회 간사 조정

라. 내실있는 자문단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(안 제9조)

-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자문단 활동에 예산 지원 근거

마.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 의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삽입(안 제10조)

- 최대 5년 이내이나, 자문단 임기 고려하여 2026. 12. 31로 존속

기한 지정, 향후 존속 시 개정으로 연장 가능

바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
- 용어, 문구, 띄어쓰기 등 정비

#### 4. 근거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, 제80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자격 변동사항과 정책자문단 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상위법에 따른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근거법규

### 지방자치법

-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